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제10장 입소정원 및 모집방법

제1조 (입소정원)

시설의 입소 정원은 25명으로 한다.

제2조 (이용대상)

이용대상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장기요양 시설급여를 인정받은 사람으로 한다.

제3조 (입소모집)

시설 입소자 모집방법은 다음과 같다.

1. 관계기관 연계 협력, 지역사회 홍보, 이용자, 보호자를 통하여 모집 한다.
2. 인터넷 등을 통한 홍보와 전화번호부 등 광고매체를 통하여 모집한다.

제4조 (구비서류)

시설에 입소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2. 입소이용의뢰서(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의 경우)
3. 장기요양인정서
4.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
5. 입소자 건강진단서 및 병적기록자료
6. 기타 시설에서 요구하는 서류

제11장 입소계약

제1조 (계약 목적)

- ① 시설과 이용자(입소자), 그리고 보호자가 이용하는 기간 동안 서비스 제공에 관하여 전반적인 책임과 의무를 규정함에 목적이 있다.
- ② 장기요양급여제공 및 비용 등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급여 개시 전에 이용자나 보호자와 ‘장기요양급여 제공계약’ (이하 “계약” 이라 한다)을 체결 한다.
- ③ 계약서를 2부 작성하여 1부는 수급자에게 제공하고, 1부는 시설이 보관해야 하며, 계약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계약에는 다음 내용이 포함 한다.
 1. 계약 당사자
 2. 계약기간
 3.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내용 및 비용 등
 4. 비급여대상 및 항목별 비용
- ④ 장기요양기관은 제1항에 따른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수급자 또는 그 가족에게 제공하려는 장기요양급여의 제공계획 및 비용(비급여대상 및 항목별 비용을 포함한다) 등 장기요양급여 제공과 관련된 사항을 설명한 후 동의서를 받아야 한다.
- ⑤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장기요양급여를 받으려는 수급자의 본인 여부, 장기요양등급,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및 내용,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 본인부담금 감경여부 등을 확인 한다.

제2조 (계약기간)

- ① 계약기간은 별도의 계약기간을 정하지 않는 경우 인정서의 유효기간으로 하며, 이용자나 보호자 간 협의에 따라 계약기간을 달리 할 수 있다.
- ② 계약기간 만료 1개월 전에 이용자나 보호자에게 재계약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이용자나 보호자는 재계약을 확인요청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재계약을 해야 한다.
- ③ 이용자나 보호자에게서 계약만료 전까지 별도회신이 없는 경우 계약은 자동으로 1년간 연장 된다.
- ④ 제1항에 따른 계약기간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가 변경된 경우에는 사실 확인 후 재계약 없이 즉시 이용료 계산에 반영한다.
 1. 장기요양 인정등급 변경 시
 2. 감경에 의한 본인부담금 변경 시
- ⑤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 장기요양 급여비용이 변경되어 이용자나 보호자에게 변경 내역을 우편, 전자적 방법 등으로 통보한 경우에는 계약내용이 변경된 것으로 본다.

제3조 (계약해지)

- ① 이용자나 보호자가 급여계약을 해지하고자 하거나, 그 계약만료 전에 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해지 예정일 15일전까지 시설에 통보해야 한다.
- ② 이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 1. 다른 이용자의 인권과 안전에 매우 위협이 될 때
 - 2. 이용계약서에 허위 사항이 발견되었을 경우
 - 3. 장기요양급여 비용을 여러 번 지체했을 경우
 - 4. 이용자가 고의로 시설물을 파괴 및 훼손하였을 경우
 - 5. 이용자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사람으로 인정받지 못한 때
 - 6. 어르신의 건강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고의적으로 숨긴 것이 드러났을 때
 - 7. 기타 이 계약 이행이 어렵다고 인정될 경우

제4조 (신원인수인의 권리 · 의무)

- ① 신원인수인(보호자 또는 보증인)의 권리는 다음과 같다.
 - 1. 표준약관에 따라 장기요양 서비스 일체와 건강관리를 수급자가 제공받을 수 있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
 - 2. 수급자의 생활공간 환경에 관한 안전성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 3. 수급자의 생활공간을 개방하여 확인할 수 있는 권리
 - 4. 수급자에 대한 건강, 식사, 생활상담, 조언 및 생활편익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 5. 수급자가 청결한 건물 및 부대기관을 이용할 수 있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
 - 6. 보호자회의에 참석하여 기관운영 및 급여제공 과정에서의 특이사항 등의 정보를 공유하고, 건의사항 등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 7. 수급자의 급여계획에 관한 알 권리
 - 8. 신원인수인의 사정에 따라 자유로이 수급자의 퇴소, 전원을 할 수 있는 권리
 - 9. 표준약관에 따른 수급자 면회 및 외박, 외출에 관한 권리
- ② 신원인수인(보호자 또는 보증인)의 의무는 다음과 같다
 - 1. 신원인수인은 수급자 건강, 병적상태 등의 자료제공에 관한 의무
 - 2. 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항목 등을 포함한 월 이용 비용부담에 관한 의무
 - 3. 인적사항 등의 정보 변경 시 통보에 관한 의무
 - 4.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 선정 및 대리인에 관한 기관 통보 의무
 - 5. 수급자의 책무로 인하여 발생한 기관 설비 및 비품, 집기 등의 오손, 파손, 멸실에 관한 원상회복 의무

제12장 이용료

제1조 (이용료)

- ① 이용자가 부담하여야 할 이용료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0조에 따른 본인 부담금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비급여비용으로 하며, 비급여비용은 원장이 정한다.
- ② 이용자나 보호자가 개별적으로 요구하는 물품이나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그 비용은 이용자나 보호자가 부담 한다.
- ③ 이용료는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산정 한다.
- ④ 이용자가 장기요양급여를 쉽게 선택하도록 이용료 정보는 기관의 내부에 게시하여 안내한다.

제2조 (이용료 변경 및 절차)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이용료를 변경하는 경우 그 변경된 이용료를 지체 없이 이용자나 보호자에게 안내하여야 한다.
 1. 이용자의 장기요양등급이 변경되었을 때
 2. 이용자의 본인부담금 감경에 의해 본인부담률이 변경되었을 때
 3.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에 고시한 장기요양급여비용이 변경되었을 때
 4.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14조의 비급여비용을 변경 할 때
- ② 급여비용 변경절차는 다음과 같다.
 1. 장기요양등급이 변경이 확인된 경우 등급에 따른 급여비용을 적용한다.
 2. 본인부담금 감경이 확인된 경우 감경에 따른 본인부담금을 적용한다.
 3.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 장기요양 급여비용이 변경되면 이용자나 보호자에게 변경 내역을 우편, 전자적 방법으로 통보 후 적용한다.
 5. 비급여비용은 시설운영 상황에 비추어 원장이 결정하며, 이용자 또는 보호자에게 변경 내역을 통보 후 비급여비용 변경계약서를 작성한다. 변경된 비용에 대해 이용자나 보호자가 동의하지 않을 경우, 변경 전 비용으로 해당 월 이용료를 수납하도록 하며, 통보 후 1개월 간 변경 전 비용으로 전원 및 퇴소 기간을 제공한다.

제3조 (이용료 납부)

- ① 이용자나 보호자는 명세서에 기재된 납부일까지 이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 ② 이용료 납부는 수납지정 계좌입금을 원칙으로 한다.

제13장 서비스 내용 및 비용

제1조(급여제공서비스 내용 및 비용)

- ① 수급자를 장기간 보호하면서 수급자의 기능상태 및 욕구 등을 반영하여 신체활동 지원 및 심신기능 유지·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등을 제공 한다.
 1. 하루에 3회 이상 영양, 수급자의 기호 및 건강상태 등을 고려하여 규칙적인 식사를 제공한다.
 2. 월 5회 이상 목욕서비스를 제공한다.
 3. 수급자가 청결한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매일 배변관리 및 구강청결 등 위생관리를 제공한다.
 4. 수급자의 신체적 건강상태를 고려하여 적절한 이동지원 및 체위변경 등을 제공한다.
 5. 기타 일상생활지원과 관련한 서비스를 적절히 제공한다.
 6. 상시적으로 기능회복 훈련을 제공하고, 정기적으로 물리(작업)치료를 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7. 정기적으로 수급자의 심신 상태를 고려하여 적절한 인지기능 프로그램 및 여가프로그램을 제공한다.
 8. 정기적으로 가족교육 등 가족지지 및 참여프로그램을 제공하고, 반기 1회는 가족이 직접 내방하여 참여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9. 시설은 이용자에게 급여를 제공함에 있어 입소비용(본인부담금, 비급여비용) 이외의 추가비용을 청구하지 않는다. 단, 이용자의 병적사항으로 발생하는 외부 의료기관이용 비용에 대해서는 전액 이용자 또는 보호자가 부담하도록 한다.

제2조 (특별보호서비스 기준 및 비용)

- ① 시설은 이용자를 격리하거나 억제대 등을 사용하여 신체를 제한하는 특별한 보호를 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이용자와 다른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제한적으로 특별한 보호를 할 수 있다.
- ② 제1항 단서에 따른 특별한 보호 제공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다른 이용자의 생명이나 신체에 위협을 초래할 수 있는 경우
 2. 대체할만한 장기요양서비스 제공방법이 없거나, 증상완화를 목적으로 긴급하거나 불가피한 경우
- ③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체를 제한하는 경우에는 이용자나 보호자에게 이 사실을 통보하여 동의를 받아야 하며, 이용자의 심신상태, 신체적 제한을 가할 수밖에 없는 사유, 신체적 제한을 가한 시간 신체적 제한을 가할 수밖에 없는 사유 등을 급여제공기록지에 자세히 기재·관리한다.

- ④ 이용자의 과잉 또는 부적절한 행동으로 다른 이용자에게 피해가 예상될 경우 상급 침실사용을 권고할 수 있으며, 이 때 발생하는 상급침실이용료는 동의절차를 거쳐 이용자가 부담한다.
- ⑤ 개별집중케어를 위해 사용되는 소모품 구입비용은 이용자 또는 보호자가 부담한다.

제3조 (의료서비스 처리절차)

- ① 이용자에게 의료서비스를 할 필요가 있는 상황이 발생한 경우 이용자 또는 보호자와 협의 후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한다.
- ② 이용자 병원진료 시 보호자가 함께 동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 ③ 가벼운 질병 등으로 외래병원이나 의원을 방문하여 진료가 필요한 경우 원칙적으로 보호자가 동행하여야 하나 부득이 동행할 수 없을 때에는 시설 직원이 동행하여 보호자의 역할을 대신할 수 있다. 단, 발생하는 진료비는 전액 이용자나 보호자가 부담한다.
- ④ 제1항에 불구하고 이용자에게 응급상황이 발생한 경우에 이용자를 먼저 의료기관으로 이송하고 보호자에게 연락한다.
- ⑤ 이용자를 의료기관으로 이송할 때 보호자가 동행할 수 없는 경우 직원을 의료기관까지 동행시킬 수 있으며, 보호자가 의료기관에 도착하면 이용자를 인계한다.
- ⑥ 원장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대한 법률」에 따라 감염자나 감염 위험성이 있는 입소시설 이용자를 즉시 격리하여 감염을 예방하고,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⑦ 원장은 협력 의료기관의 의사나 지정된 계약의사가 월 2회 이상 방문하여 입소시설 이용자를 진료하고 건강상태 등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한다. 이 경우 계약의사 진료비, 약제비 등의 비용은 이용자나 보호자가 부담한다.
- ⑧ 병원진료를 위한 이동, 개인적 필요에 의하여 의료기관을 이용할 경우 이동에 따른 차량이용료는 이용자 또는 보호자가 별도로 부담한다.

제14장 배상책임 및 면책범위

제1조 (서비스제공자의 배상책임 및 면책범위)

- ① 직원의 고의나 중과실로 서비스 제공 중에 이용자의 생명, 신체, 재산에 손해를 끼쳤을 때는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 다만, 제3자의 귀책사유로 발생한 손해 및 시설의 귀책사유 없이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는 배상책임을 지지 아니 한다.
1. 직원의 고의나 중과실로 인하여 입소자를 부상케 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하였을 때
 2. 약을 잘못 투약하여 입소자의 건강을 상하게 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하였을 때
 3. 상한 음식을 제공하였을 때
-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소자나 보호자는 배상을 요구할 수 없다.
1. 입소자가 일상적인 생활 중 자연적으로 사망한 경우
 - 가. 자연사
 - 나. 노인성질환에 따른 사망
 - 다. 지병에 기인한 사망
 - 라. 심장마비에 의한 사망
 - 마. 의학적 소견에 의한 특이체질이나 불가항력적 합병증에 의한 사망
 - 바. 연하곤란으로 인한 기도폐쇄
 - 사. 폐렴
 - 아. 기타 이에 준하는 사항
 2. 입소자가 임의로 외출이나 외박하여 상해를 당했거나 사망한 경우
 3. 입소자가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상해를 당했거나 사망한 경우
 4. 입소자가 본인의 고의나 중과실로 인하여 상해를 당했거나 사망한 경우
 - 가. 침대추락
 - 나. 기타 병상 생활 중 낙상 등으로 인한 골절
- ③ 입소기간 중 개인소지품(귀중품 포함)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통지되어 양자 간 확인된 물품 이외의 소지품에 대한 분실 및 파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이 없다.
- ④ 입소기간 중 거주실내 및 신체, 의복 등에 현금 보관을 하지 말아야 하며, 현금은 사무실에 보관하도록 하며 그 이외의 현금 분실에 대해서는 손해배상책임이 없다.
- ⑤ 입소 기간 중 사식(반찬류 및 간식, 외식 포함)의 반입 및 취식으로 인한 신체상의 상해에 대해 일체의 손해배상책임이 없다. 다만 그러한 일을 예방하기 위하여 사식을 가져온 경우 시설 지침에 따른다.
- ⑥ 시설 직원의 고의 또는 중과실로 시설에 손해를 끼쳤을 경우 징계 처분과 관계없이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2조 (시설물 사용상 주의사항)

- ① 시설은 입소자의 생명, 신체 및 재산의 위험이나 장해가 될 수 있는 요인을 미리 제거하여 안전사고를 예방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화재 등 비상상황에 대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② 시설은 입소자의 안전 및 감염예방 등을 위하여 이용자 면회시간, 면회대상자 및 반입물품 등을 제한할 수 있다.
- ③ 입소자는 시설 내에서 흥기 및 자해에 이용될 수 있는 물건을 소지할 수 없으며, 위험성이 높은 물건은 직원의 관리 하에 사용할 수 있다.
- ④ 입소자의 귀책사유로 시설이나 타인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 입소자 또는 보호자는 이를 배상 하여야 한다.
 - 1. 비품 또는 기물을 고의 또는 과실로 파손, 훼손한 때는 이의 없이 변상한다.
 - 2. 입소자의 귀책사유로 타인에게 상해를 입혔을 경우 그에 따른 비용을 부담한다.
 - 2. 계약의 종료, 해지 등의 사유로 퇴소할 때는 그 시설물 및 비품을 원상태로 반환하여야 하고, 만약 합의에 의한 변형이 있었을 경우 원상 회복시켜 반환하되, 이로 인한 비용이나 손해가 발생하였을 경우 그 책임을 부담한다.

사랑의 집 급여 종류별 비용(2.3:1)

2025. 01. 01 기준

1. 장기요양 급여의 종류 : 시설급여
2. 비용 : 등급별 1인당 비용으로 정하며, 급여비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등급		1등급	2등급	3,4,5등급	비급여대상
1일당		86,030	79,810	75,360	식사재료비 (1식 2,500원) 간식비 (1일 1,000원) 상급침실사용료 (1일 10,000원) (월 250,000원) 이.미용비 (커트외 실비) 의료비 (실비)
총급여비용 (100%)	30일	2,580,900	2,394,300	2,260,800	
	31일	2,666,930	2,474,110	2,336,160	
본인부담금 (20%)	30일	516,180	478,860	452,160	
	31일	533,380	494,820	467,230	
본인부담금 (12%)	30일	309,700	287,310	271,290	
	31일	320,030	296,890	280,330	
본인부담금 (8%)	30일	206,470	191,540	180,860	
	31일	213,350	197,920	186,890	
식재료비 (1식 2,500원) 간식비 1,000원	30일	255,000	255,000	255,000	
	31일	263,500	263,500	263,500	
자부담월계 (20%)	30일	771,180	733,860	707,160	
	31일	796,880	758,320	730,730	
자부담월계 (12%)	30일	564,700	542,310	526,290	
	31일	583,530	560,390	543,830	
자부담월계 (8%)	30일	461,470	446,540	435,860	
	31일	476,850	461,420	450,390	

- *등급별 총급여비용 중 일반수급자는20%, 경감수급자는12%, 8%를 본인이 납부하고 나머지는 공단에서 부담합니다. (기초수급대상자는 무료)
- *식사재료비는 전액 본인부담이며, 이.미용서비스는 자원봉사자 후원으로 이루어집니다.
- *본인부담금납부방법과시기는노인요양시설과자율적으로정하여납부하시면됩니다.
(매월 25일 선 수납)

사랑의 집 급여 종류별 비용(2.1:1)

2025. 01. 01 기준

1. 장기요양 급여의 종류 : 시설급여
2. 비용 : 등급별 1인당 비용으로 정하며, 급여비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등급		1등급	2등급	3,4,5등급	비급여대상
1일당		90,450	83,910	79,240	식사재료비 (1식 2,500원) 간식비 (1일 1,000원) 상급침실사용료 (1일 10,000원) (월 250,000원) 이.미용비 (커트외 실비) 의료비 (실비)
총급여비용 (100%)	30일	2,713,500	2,517,300	2,377,200	
	31일	2,803,950	2,601,210	2,456,440	
본인부담금 (20%)	30일	542,700	503,460	475,440	
	31일	560,790	520,240	491,280	
본인부담금 (12%)	30일	325,620	302,070	285,260	
	31일	336,470	312,140	294,770	
본인부담금 (8%)	30일	217,080	201,380	190,170	
	31일	224,310	208,090	196,510	
식재료비 (1식 2,500원) 간식비 1,000원	30일	255,000	255,000	255,000	
	31일	263,500	263,500	263,500	
자부담월계 (20%)	30일	797,700	758,460	730,440	
	31일	824,290	783,740	754,780	
자부담월계 (12%)	30일	580,620	557,070	540,260	
	31일	599,970	575,640	558,270	
자부담월계 (8%)	30일	472,080	456,380	445,170	
	31일	487,810	471,590	460,010	

- *등급별 총급여비용 중 일반수급자는20%, 경감수급자는12%, 8%를 본인이 납부하고 나머지는 공단에서 부담합니다. (기초수급대상자는 무료)
- *식사재료비는 전액 본인부담이며, 이.미용서비스는 자원봉사자 후원으로 이루어집니다.
- *본인부담금납부방법과시기는노인요양시설과자율적으로정하여납부하시면됩니다.
(매월 25일 전 수납)